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0,081,151,299	302,434,539
일 반 회 계	9,006,612,247	270,198,367
특 별 회 계	1,074,539,052	32,236,172
기 타 특 별 회 계	1,074,539,052	32,236,172
의 료 급 여 기 금	620,987,331	18,629,620
동 부 권	36,150,000	1,084,500
학 교 용 지 부 담 금	6,061,000	181,830
소 방	410,464,091	12,313,923
특정자원분 지역 자원 시설 세	876,630	26,29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42,275,233천원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265,4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